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(법률 제20337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, 인용조문의 오류와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이전

3) 행정규제 : 비대상(사전심사 완료, 국무조정실)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2호 중 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”을 “제로에너지건축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각각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17조제4항”을 “제1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”을 “제로에너지건축물”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을 삭제한다.

별표 3 제1호 제1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·평가 주요항목란의 “1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”를 “1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축물 에너지 평가서

[] 공동주택 [] 업무시설

건축물	건축물명	준공연도
현황	소재지	
	연면적/전용면적 m ² / m ²	주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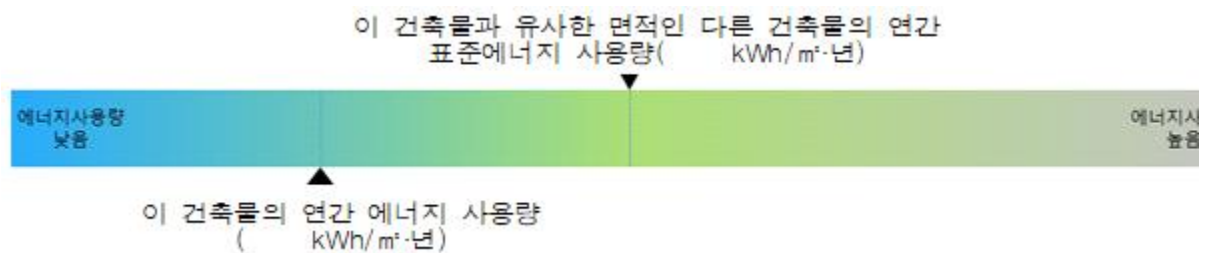
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

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(1+++ ~ 7등급)	인증등급	1차 에너지 소요량	kWh/m ²
	유효기간 ~		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(플러스(+), 1, 2,3,4,5등급)	인증등급	에너지 자립률	%
	유효기간 ~	1차 에너지 소요량	kWh/m ²

* '1차 에너지 소요량'은 건축물 자체의 물리적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값으로, 다음의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표의 '에너지 사용량(건축물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에너지의 사용량)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.

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

에너지 사용량	도시가스	kWh/m ² · 년	온실가스 배출량	kg/m ² · 년
	지역냉난방	kWh/m ² · 년		
	열 (a)	kWh/m ² · 년		
	전 기 (b)	kWh/m ² · 년		
	합 계 (a+b)	kWh/m ² · 년		



이 건축물의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(열+전기)은 이 건축물과 유사한 면적인 다른 건축물 (이 건축물과 같은 시·도에 있는 건축물)의 표준에너지사용량 대비 %(열 %, 전기 %)입니다.

※ 우리집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린투게더(www.greentogether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건축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4월 중 새로 공개됩니다(전년도에 사용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)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 CI

운영기관 CI

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인	명 칭	
	대 표 자	법인등록번호
	소 재 지	
	전 화 번 호	
	설립 근거	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

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.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.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.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.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	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**사업자등록증명**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결재	➔	지정서 발급
신청인		발급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	발급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	발급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	발급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	제1조의2(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<u>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</u>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	2. ----- -- <u>제로에너지건축물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녹색건축센터의 지정) ① (생략)	제10조(녹색건축센터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<u>사업자등록증</u> 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사업자등록증</u> 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자등록증</u> ----- <u>등록증</u> -----. <u>사업자등록증</u> ----- -----

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6조(자격·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토교통부장관(전문기관을 포함한다)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

-----.

제11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제17조제6항-----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자격·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제로에너지건축물 -----

--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
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
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
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
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를 처리할 수 있다.